


##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내 용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상품명                  | • 정기예금(단리,복리) / e정기예금(단리,복리)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가입대상                 | •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가입금액                 | • 10만원 이상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가입기간                 | • 1개월 이상 ~ 24개월 이하 (일단위)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가입채널                 | •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이자지급시기               | • 만기일시지급식 (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<br>• 매월이자지급식 (단리식)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예금자 보호여부             |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당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제한사항                 |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<br>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<br>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이자율<br>(21.12.23 현재) | 기본   | • 신규(재연장)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<br>• 비대면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)으로 12개월이상 가입 시 0.05% 우대금리 적용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만기후  | 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만기이자 계산방법            | 구 분  | 이자 계산식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| 월 단위  |                      | 일 단위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단리식  | 원금×이율/12×일수   |                      | 원금×이율/365×일수 |  |
| 복리식                  | 원금×{(1+이율/12) <sup>n</sup> -1} (n은 경과월수)   |   | 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 |              |  |
| 원천징수                 | 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
